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민성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,
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허가기준 개정[별표27]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3. 3. ~ 3. 8.)결과 의견서 1건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중 축사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,
- 타 시·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축사 등 농가에 부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개정본문에는 별표 27의 기호(■)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별표 27의 기호(■) 제3호 '가'목에 '우사를 제외한'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자구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